

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유의사항

D-2(D-2-1~4, D-2-6~8), D-4(D-4-1,7)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유학생은 반드시 [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](#)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
허가 없이 근무 중 적발될 경우 **최대 3천만원의 벌금**이 부과됨과 동시에 **향후 비자 발급 제한, 입국 불허조치 등 불이익**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○ 신고 유형별 구분

구분	업무내용	비고
불필요	- 교내 단순/ 일시적 근로 - 교내 전공 관련 연구 - 필수 현장실습하기	
필요	- 통상적으로 대학생이 행하는 아르바이트 수준 - 인천대의 전공과 관련 없는 연구 참여 - 타대학의 전공 관련 연구 참여 - 자율 현장실습	- 타대학 전공관련 연구 참여 시 학업 연계 심사 서류 추가 제출(①지도교수 확인서, ②대학원장 추천서, ③연구 참여 사유서)
불가	- 제조업 및 건설업(건설현장 식당 근무 포함) - 전문분야에서의 근무 - 택배기사, 배달 라이더 등 특수 형태 근로 - 교외 전공과 관련 없는 연구 - 개인과외교습행위, 외국어 교육 유관 시설	- 제조업: 토픽 4급 이상은 가능 - 건설업: 적발 시 즉시 강제출국 - 타대학에서 전공과 관련 없는 연구 참여 시 연구비자(E3)의 활동범위에 해당하므로, '시간제 취업'이 아닌 '체류자격 외 활동'으로 신고

○ 자격 및 근무시간

- 성적: 신청일 기준 직전학기 평균 C학점(2.0) 이상
- 조건에 따른 근무 허용 시간

과정	학년	한국어능력기준 ①TOPIK ②사회통합프로그램 ③세종학당		시작 시기	허용 시간	
					주중	주말·방학
어학 연수	재학중	① 2급	X	6개월 이후 가능	10시간	
		② 2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 ③ 초급2 이상 이수	O		25시간	20시간
학부	1-2	① 3급	X	즉시 가능	10시간	
		②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③ 중급1 이상 이수	O		30시간	무제한
	3-4	① 4급	X		10시간	
		②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③ 중급2 이상 이수	O		30시간	무제한
대학원	재학중		X		15시간	
			O		35시간	무제한

※ 영어 트랙 학생의 경우, 한국어능력기준을 아래 서류로 대체 가능

1. 전 과정이 영어로 실시됨을 인증하는 서류
2. TOEFL 530(CBT 197, iBT 71), IELTS 5.5, CEFR B2, TEPS 601 이상의 성적표(학년에 관계 없음)

○ 아르바이트(시간제취업) 허가 절차

학생	- 시간제 취업 요건 확인 후 구직활동
↓	
취업처	- 사업자등록증, 사업주 신분증, 표준근로계약서 학생 전달
↓	
학생	- 시간제취업 신청을 위한 서류를 구비하여 국제지원과 방문
↓	
국제지원과	- 학생 제출서류 확인 후 시간제취업확인서 서명
↓	
학생	- 인천출입국·외국인청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※ 온라인(하이코리아): 약 2주 소요 ※ 오프라인(방문예약필요): 심사 후 적합할 경우 즉시 허가
↓	
인천출입국·외국인청	- 서류 검토 후 승인
↓	
학생	- 표준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날짜부터 근무 시작 ※ 출입국외국인청의 허가 전 근무 시작 시 불법취업으로 간주

○ 시간제 취업 허가 신청 서류

- 시간제취업 확인서(시급 및 근무내용, 근로기간, 근무요일/시간 명시)
- 여권
- 외국인등록증
- 재학증명서
- 성적증명서
- 언어 증빙서류: TOPIK 성적표 등 이를 입증하는 서류
(유효기간이 지난 TOPIK 성적 인정 가능, 출입국사무소에 제출 이력 있는 경우 제출 불필요)
- 아르바이트 하는 곳의 사업자등록증
- 사업주 신분증 사본
- 표준근로계약서 사본(시급 및 근무내용, 근무장소, 근로기간, 근무요일/시간 명시)
- 시간제 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(사업자등록증 내 제조업 및 건설업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)

○ 기타 유의사항

- 허가 기간: 체류기간 내에서 1년 이내, 장소는 동시에 2곳으로 한정(시간 합산)
- 입학 후 최초 1학기 재학생 중 성적증명서 미발급자는 성적 자격 적용 예외되나, 허가기간은 1학기로 제한
- 영어 트랙 학생 중, 영어를 모국어 또는 공용어로 하는 국가 유학생은 영어 언어능력 증빙서류 제출 면제

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확인서

대상자	성명		외국인 등록번호					
	학과(전공)		이수학기					
	전화번호		e-mail					
취업 예정 근무처	업체명							
	사업자 등록번호		업종					
	주소							
	고용주	(인 또는 서명)	전화 번호					
	취업기간		급여 (시급)					
	근무시간							
		평 일 : 총 시간					주말 : 총 시간	
요일		월	화	수	목	금	토	일
	시간							

위 유학생은 본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현재의 학습 및 연구 상황으로 볼 때, 상기 예정된 시간제취업 활동을 통해서는 학업(또는 연구 활동)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, 이에 확인합니다.

20 . . .

※ 시간제취업허가 [한국어능력기준 제출자]허용시간은 어학연수생은 주당 20시간, 학부과정은 주당 20시간 이내(인증대학은 25시간), 석박사과정은 주당 30 시간 이내임.

▶ 한국어능력기준(토픽 기준) : 어학연수 2급, 전문학사 3급, 학사(1~2학년) 3급, 학사(3~4학년) 4급, 석박사 4급이상 ◀

- 한국어 능력기준 미달할 경우 허용시간은 어학연수생과 학부생 10시간, 석박사과정 15시간으로 제한 -

※ 시간제취업 허가 전 취업할 경우 [유학생과 고용주] 모두 처벌될 수 있습니다.

(허가된 근무처에서만 취업 활동 가능)

인천 출입국·외국인청(사무소·출장소)장 귀하

유학생담당자 확인란	소속	인천대학교	성명	(인 또는 서명)
	인증대학 여부	해당 ☒ 비해당 ☐		
	직위 (연락처)			

Appendix 4-1

Part-time Work Confirmation Form for International Students

Part-time Work Confirmation for International Students										
Applicant	Name				Alien registration No.					
	Department (Major)				Semester					
	Tel no.				e-Mail					
Expected Workplace	Company name									
	Business registration No.					Type of Industry				
	Address									
	Employer	(Seal/Signature)				Tel no.				
	Employment Period					Wage (per hour)				
	Working Hours	Weekday:				Weekend:				
			Weekday : hours					Weekend: hours		
		day	Mon	Tue	Wed	Thu	Fri	Sat	Sun	
hour										
I hereby confirm that the above named student is enrolled at our university, and that the part-time job indicated above will not impede his/her learning (research) at school considering his/her academic and research progress hitherto. ※ The number of allowed hours for part-time work (For those submitting the Korean language proficiency standard) is 20 hours per week for language training students, 20 hours per week for undergraduate students (25 hours for IEQAS-certified universities), and 30 hours per week for masters/doctoral degree students. ▶ Korean language proficiency standard (TOPIK): Language training level 2, Associate degree level 3, Bachelor's degree (1st-2nd year) level 3, Bachelor's degree (3rd-4th year) level 4, Masters/doctoral degree level 4 or higher - In case the Korean language proficiency standard is not fulfilled, the number of allowed work hours is limited to 10 hours for language training/undergraduate students, and 15 hours for masters/doctoral degree students ※ Both students and employers may be subject to punishment if working before obtaining a part-time work permit. (Employment activities are allowed only at a permitted workplace) MM/DD/YYYY										
TO: Chief of Incheon Immigration (branch) Office										
Confirmation by University Officer	University	Incheon National University			Name	(Seal/Signature)				
	IEQAS	YES ☒	NO ☐							
	Position (Tel no.)									

※ 사업자등록증상에 제조업이 있는 경우에만 고용주가 작성

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				
대 상 자	성 명		외 국 인 등록번호	
	취업기간		급여 (시급)	
	근무시간	평 일 : 토·일요일 :		
	근무내용 (구체적 기재)			
취업 예정 근무처	업 체 명			
	사 업 자 등 록 번 호		업 종	
	고 용 주 성 명		전화 번호	
위 유학생을 시간제 취업으로 고용함에 있어 위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며, 제조업 등 허가된 이외의 업종에 근로하게 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. 20 . . . 고용주 성명 : (서명) ※ 시간제취업허가 허용시간은 어학연수생은 주당 20시간, 학부과정은 주당 20시간 이내(인증 대학은 25시간), 석박사과정은 주당 30 시간 이내임.				
인천 출입국관리사무소(출장소)장 귀하				
붙임 : 고용주 신분증 사본 1부.				